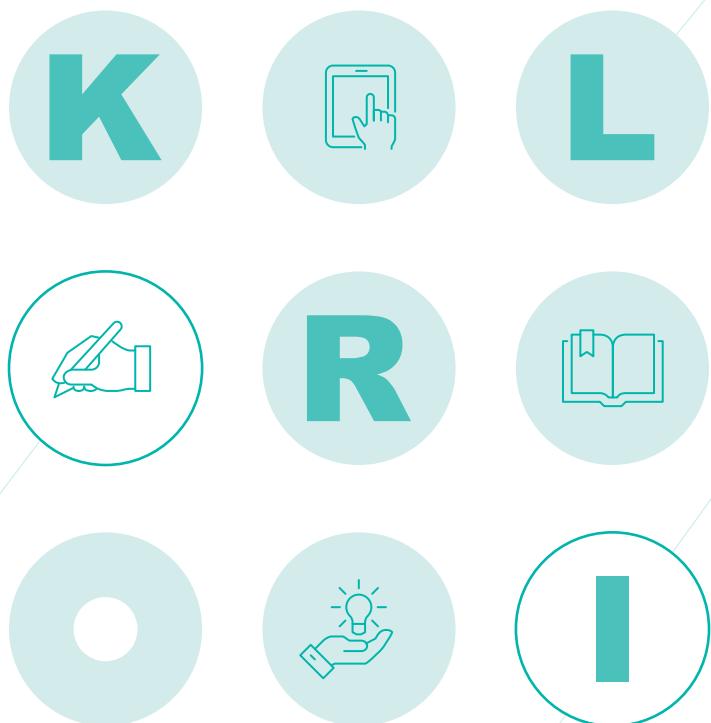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박 광 동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Study on Basic Orientation of Rearrangement of Youth-related
Law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연구책임자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ark, Kwang-Dong

2021. 6. 4.

연 구 진

연구책임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엄보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심의위원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감리위원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2020년 2월 4일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관련한 입법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임.
-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라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 권리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청년기본법」의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II. 주요 내용

- 「청년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
 - 「청년기본법」은 청년이라는 일정한 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임.
 - 「청년기본법」은 정책형, 제1유형,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에 속함
 - 청년 관련 법률은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청년기본법」에 우선 적용됨.

- 현행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연령인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범위 설정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최대한의 참여 효과 및 노동시장 밖의 청년 관련 문제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청년기본법」 관련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방안과 청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 · 개정보다는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해외 「청년기본법」기반 법령체계
- 현행 해외의 청년 관련 법체계는 기본법 형태가 아닌 개별법 형태가 다수임
 - 해외의 청년 지원 정책 입법은 국가별로 입법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효과적 청년 지원 정책을 위한 집행력 있는 입법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 정부에서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면서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 중이나, 이에 대한 입법형식으로는 아래와 같은 구상이 가능함.
 - 현행 「청년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처럼 대책형, 제2 유형, 특정 분야의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
 - 「청년기본법」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분법화하여 독립된 「청년 권리증진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 복수의 청년 권리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으로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 8개 조문을 각각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이를 유형화하여 5개의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법적 근거로 하여 하나의 새로운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 위의 입법형식 중 입법 목적 실현의 효율성, 입법 경제성, 법체계의 정합성, 국민의 이해 용이성을 고려하면 하나의 새로운 개별법(「(가칭)청년권익증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타당함.

III. 기대효과

- 「청년기본법」상의 청년발전 및 청년권익증진 취지 시행기반 마련
-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는 「청년기본법」개정 및 신법 제정을 위한 전수 자료의 역할

▶ 주제어 : 청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청년고용, 권리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on February 4th, 2020, the debate has made little progress over the legislation of practical ways to impl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youth.
-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in August 2020 has sparked a debate over boosting the consistency in pushing for youth policies based on the Act and enhancing the legal system for effectively impro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youth.
- These circumstances necessitate a review over the need for legislation for both detailing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realizing the ideas of the Act and over criteria of legislation types.

II. Main Content

- Legal Nature and System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 The Framework Act on Youth is a framework law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a certain group of people—the youth by securing their legal status and rights.
 - The Act is a framework law as a form of policy, type 1, and the general norms of policy means.

- The two different laws are preferentially applicable to the Framework Act on Youth: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in relation to boosting employment of the youth; and the Promotion and Support Act of Successor Farmers and Fishermen and Young Farmers and Fishermen, to promoting young farmers and fishermen.
 - The age range of 19 to 33 to define the youth under the Framework Act on Youth currently in force is conceived to encourage the maximum participation of the youth in the labor market and to reflect in policies the problems of the youth out of the labor market.
 - The current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Youth put a bigger emphasis on formulating applicable provisions regarding support for the youth than on enacting or amending a specific law on ways to expand youth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or on measures to improve their rights and interests.
- Legal System for Youth in Other Countries
- As for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a large number of them have separate laws, not framework laws on the youth.
 - Legislations for supporting the youth vary on nations, but many of them have enforceable legislative systems for effective support policies.

- Forms of Legislation for Detailing the Framework Act on Youth
 -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a new legislation to detail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to consistently and efficiently realize its ideas. Any of the following forms of legislation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To wholly amend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Youth into a framework act as a form of measure, type 2, and a comprehensive code of laws, as with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 To separate the section of measures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youth under Chapter IV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s an independent framework act on impro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youth:
 - Either to enact the eight provisions of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youth under Chapter IV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s separate laws; or to categorize and enact them into five separate laws:
 - To enact a new separate law by using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youth under Chapter IV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s a legal basis:
 - It would be appropriate to enact a new separate law, tentatively named "Act to Improve Rights and Interests of Youth", given such factors of the aforementioned options as the efficiency of achieving the legislative purpose, legislative economics, convergence of the legal system, the public's ability to understand.

III. Expected Effects

- The study on the basic orientation for rearranging the youth-related law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would lay a foundation for attaining the purposes of better well-being for the youth and of improving their rights and interes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Youth.
- This research would also serve as comprehensive data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Youth or to enact a new one.

► Key Words : Youth, Framework Act, Framework Act on Youth, Youth Employment, Rights

목차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5

I. 연구의 목적	17
II. 연구의 범위	21

제2장 「청년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 / 23

I. 기본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	25
1. 청년 관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5
2. 「청년기본법」과 현행 청년관련 법률과의 관계	33
II. 「청년기본법」의 법체계	35
1. 법체계	35
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37
III. 청년 관련 국회 입법(안) 검토	42
IV. 국내 「청년기본법」유사 법체계 및 분석	45

제3장 해외 「청년기본법」기반 법령체계/ 59

I. 법체계 개관	61
II. 청년 관련 단일 법률국가 : 네덜란드	63
III. 혼법조항국가 : 스페인	65
IV. 단일법전이 아닌 국가 : 프랑스	67
V. 검토	68

목차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4장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 69

I. 입법화 방식의 선택 기준	71
II.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75
1. 기본법 관련 검토	75
2. 개별법 관련 검토	80
3. 청년 권리증진을 위한 법률의 법적 성격	85

제5장

결 론 / 93

참고문헌	99
부 록	107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 론

I . 연구의 목적

II . 연구의 범위

제1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2020년 2월 4일(시행일 2020년 8월 5일)에 대한민국의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대한 법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¹⁾ 이는 현재 청년 인구의 급감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가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세대간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²⁾ 또한 현재 해외 주요국가의 청년 관련법은 청년에 대하여 단순하게 빈곤 문제를 타개하는 것이 아닌, 청년 개인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청년의 폭넓은 사회 참여를 통해 긍정적 삶의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New Normal (새로운 기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³⁾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제정 이전에 청년 관련 기본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예컨대,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발전기본법(안)」,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청년발전지원법(안)」등이 제안되었다.

1) 법제처, 「청년기본법」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lInfoP.do?lslSeq=213951&ancYd=20200204&ancNo=16956&efYd=2020080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3.15.)

2) 정부 공식통계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고학력 니트 청년, 청년 가구 빈곤율, 청년층 채무액 등의 수치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2018년 기준 20~34세 청년 실업률은 8.0%로 전체 실업률 3.8%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19~24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9.7%로 25~29세(16.1%)와 30~34세(12.8%) 청년 빈곤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다. 2012년 기준 30대 미만 청년의 채무 보유율은 54.2%였으나, 2017년에는 그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63.5%를 기록하였고, 평균 채무액도 2012년 2,367만 원에서 2017년 5,021만 원으로 5년 사이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전경숙,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4.30., 118면].

3) 오재호,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 하나?, 이슈&진단 406호, 경기연구원, 2020.3.11., 7면.

각각의 입법안은 세부적인 조문내용의 차이는 있었으나, 법체계적으로 보면 법률명과 정책조정기구의 명칭 등에 차이가 있을 뿐 개략적으로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⁴⁾ 특히, 위와 같은 입법안에 대해서는 청년의 범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청년 관련 조사·연구, 청년정책의 심의·조정기구, 청년정책의 기본시책, 청년지원, 청년 기념 기간 지정,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 필요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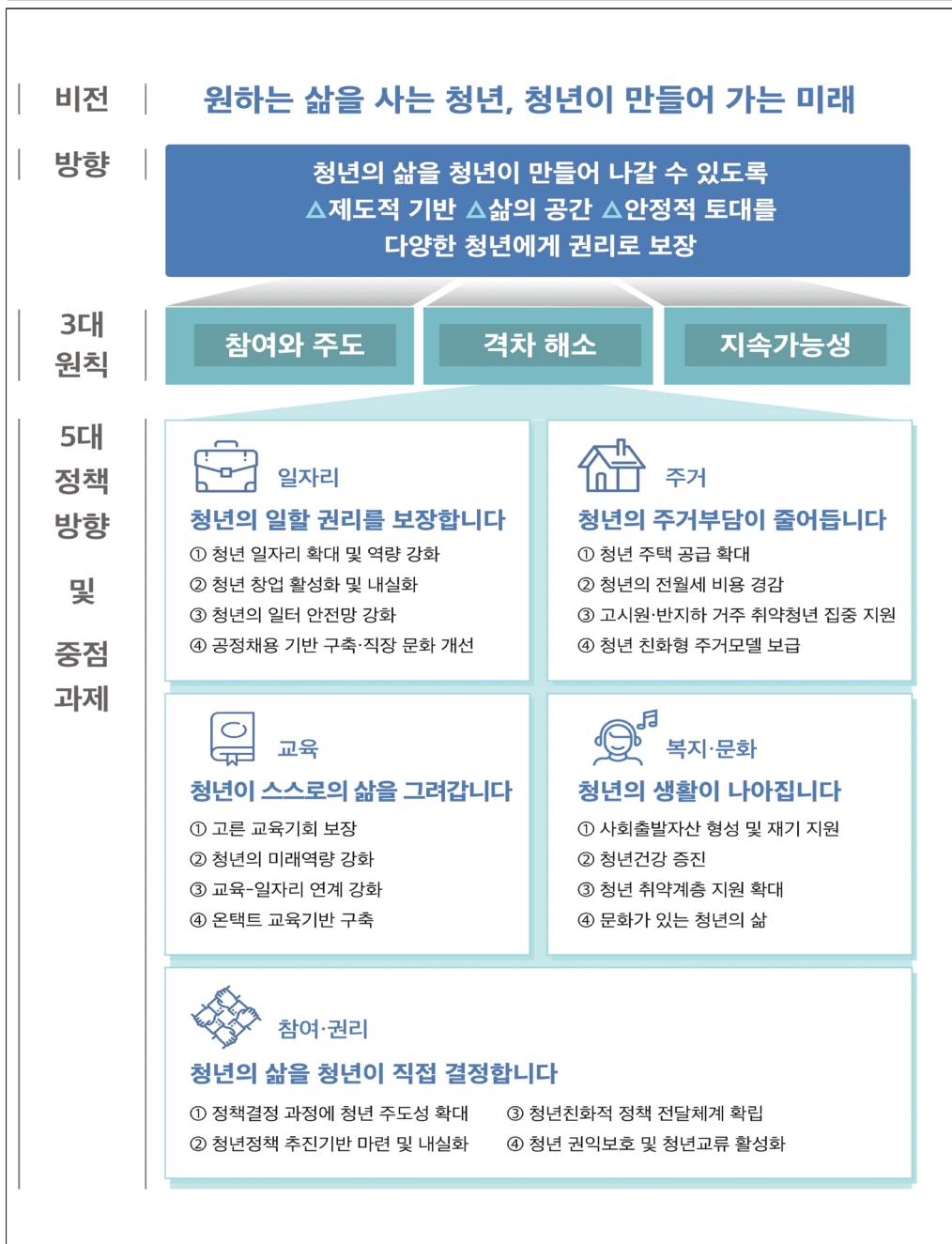
다만, 2020년 2월 4일에 「청년기본법」 제정되었으나,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입법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었다.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은 청년 정책과 관련한 ① 생애주기 차원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실용적 지원으로 전환, ② 특정분야 정책이 아닌 종합정책으로 인식, ③ 청년기본법 제정·컨트롤 타워 구축 등의 토대 마련에는 기여하였다.⁵⁾ 이러한 입법적 기반을 토대로 2020년 12월에는 「청년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2021년 3월 30일에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이 수립 및 발표되었다.

4) 김원모,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기본법안,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청년기본법안, 청년 발전지원법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19.9., 21면.

5)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1~‘25), 관계부처 합동, 2020.12, 5면.

<표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6)



그러나 종전까지는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① 기준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 한시지원 정책 중심, ② 고용·주거·교육·복지 등 개별 부처 위주 추진, ③ 코로나19 등 대처를 위한 고용정책으로 수렴, 다양한 욕구 반영 미흡이라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⁷⁾ 특히, 현재 정부의 청년정책이 주로 일자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청년정책의 포용적 사회 정책으로의 확장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⁸⁾

이러한 한계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논의와 함께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의 권리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논의는 「청년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 이유가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⁹⁾ 이러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실현하기 위한 현행 청년 관련 법제가 청년의 권리증진 추진에 미흡하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각 분야별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개별법들은 일정한 정도 존재하고 있으나, 청년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권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기본법」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6) 관계부처 합동, 앞의 글(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1~’25)), 7면.

7) 관계부처 합동, 앞의 글(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5면.

8) 현 정부의 청년정책은 ① 기준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 한시지원 정책 중심, ② 고용·주거·교육·복지 등 개별 부처 위주 추진, ③ 코로나19 등 대처를 위한 고용정책으로 수렴, 다양한 욕구 반영의 미흡이라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앞의 글(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1~’25)), 5면].

9) 법제처, 「청년기본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InfoP.do?lSeq=213951&ancYd=20200204&ancNo=16956&efYd=2020080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이러한 청년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의 권리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청년 관련 법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청년 관련 법제의 법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청년기본법」의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 기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¹⁰⁾

II. 연구의 범위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의 권리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수행하면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청년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의 성격, 법체계, 청년 관련 국회 입법(안) 및 국내 「청년기본법」유사 법체계(청소년 관련 법체계)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해외 「청년기본법」기반 법령체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청년 정책의 법체계가 서로 다른 유형인 네델란드(청년 관련 개별 법률 국가), 스페인(헌법조항 국가), 프랑스(개별 법률상의 보호 조항 국가)의 입법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입법화 방식의 선택 기준 및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범위 설정을 통하여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의 권리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수행하면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0)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국무조정실 프로젝트인 「청년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연구기간: 2021.5.17.~2021.9.30.)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자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을 검토하는 것에 연구를 한정한다.

제2장

「청년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

- I . 기본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
- II . 「청년기본법」의 법체계
- III . 청년 관련 국회 입법(안) 검토
- IV . 국내 「청년기본법」유사 법체계 및 분석

제2장

「청년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

I. 기본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

1. 청년 관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 필요성

기본법은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이나, 주로 국정의 중요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지시하는 법률로서,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을 말한다.¹¹⁾ 또한,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을 치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예: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¹²⁾등)도 있다.¹³⁾

현행 「청년기본법」과 유사하게 일정 계층에 대한 기본법으로는 「소비자기본법」(종전: 「소비자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종전 「여성발전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등이 있다. 이러한 일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은 주로 대상에 대한

11)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9-20면.

12) 독일의 법령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독일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잠정적 기본질서를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Grundgesetz)”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었다[박영도/김수진,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 법제처, 2005, 14면]. 다만,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은 1990년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으로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Stefan Korieth, “독일 기본법-헌법의 지속성과 발전”, 제헌 62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대한민국국회/한국헌법학회, 2010.7.16., 30면]. 결국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서 본다면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이라고 할 것이다.

13) 박영도, 앞의 보고서(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19-20면.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입법된 경우가 많다. 이때의 보호에 대해서는 특수한 지위에 의한 환경적 위험에 대한 보호 및 지원(「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정한 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통한 보호와 지원(「소비자기본법」(종전: 「소비자보호법」), 「소상공인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종전: 「여성발전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의 경우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사회 등의 불안, 고용 축소 등으로 인한 청년실업률의 극대화 및 주거난과 채무 부담의 가중 등의 이유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 등을 포기하는 등 대한민국의 청년에 대한 상황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고, 이러한 문제는 미래 세대와 국가에 막대한 노후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급속히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각종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성이 크므로¹⁴⁾,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¹⁵⁾, 「청년기본법」은 청년이라는 일정한 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통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것이다.

14) (2001778) 이원욱의원 등 10인, 「청년기본법안」(이원욱의원 등 10인), 2016-08-24, 제안이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J6E0D8T2Q4W1G4U5R0Y5M7J6C7V1(방문일: 2021.5.24.))

15) 법제처, 「청년기본법안」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lInfoP.do?lslSeq=213951&ancYd=20200204&ancNo=16956&efYd=2020080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표2> 일정 계층에 대한 기본법의 목적

법률명	입법목적
「소비자기본법」 (종전: 「소비자보호법」)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¹⁶⁾
「양성평등기본법」 (종전: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95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음. 그러나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큰 폭의 개정 없이 1995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세계적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로도 그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있으며, 이미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한 국회, 정부, 학계 등에서도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따라서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¹⁷⁾

법률명	입법목적
「여성폭력방지기본법」	<p>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 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폭력, 디지털폭력, 문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기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¹⁸⁾</p>
「청소년 기본법」	<p>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¹⁹⁾</p>

16) 법제처, 「소비자기본법」(종전: 「소비자보호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548&ancYd=20060927&ancNo=07988&efYd=200703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17) 법제처,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4260&ancYd=20140528&ancNo=12698&efYd=2015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18) 법제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085&ancYd=20181224&ancNo=16086&efYd=2019122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이러한 「청년기본법」은 ① 청년정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② 청년정책 추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고하게 하며, ③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④ 청년의 정책 참여 강화라는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²⁰⁾

(2) 「청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유형

「청년기본법」은 청년이라고 하는 일정한 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통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법이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및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써,²¹⁾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청년기본법」 제1조). 이러한 「청년기본법」 제정 이유와 목적 조항으로 보았을 때, 위의 기본법의 유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본법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법이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기본법의 유형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다양한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²²⁾ 이를 상대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우선 기본법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기본법의 ① 성격, ② 효력 범위, ③ 규범적 성격 등이 있다.

19) 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tInfoP.do?lslSeq=4676&ancYd=19911231&ancNo=04477&efYd=1993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https://www.law.go.kr/LSW/lstInfoP.do?lslSeq=4676&ancYd=19911231&ancNo=04477&efYd=1993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20) 전경숙, 앞의 글, 127면.

21) 법제처, 「청년기본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tInfoP.do?lslSeq=213951&ancYd=20200204&ancNo=16956&efYd=2020080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4.27.\)](https://www.law.go.kr/LSW/lstInfoP.do?lslSeq=213951&ancYd=20200204&ancNo=16956&efYd=2020080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4.27.))

22) 박영도, 앞의 글(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119-120면.

우선 ① 기본법의 성격에 따라 이념형(선언형), 정책형, 대책형, 개혁추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²⁴⁾

<표3> 기본법의 성격별 유형²³⁾

유형	내용	예
이념형 (선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원칙을 정하는 것 - 이 형의 기본법은 그 분야에 있어서 지도 법으로서 기본적인 이념·원칙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국민에게 널리 제시하는 역할도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기본법」 - 「교육기본법」
정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대강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 「과학기술기본법」
대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행정상의 대책의 기본을 정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복지향상,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청소년기본법」
개혁추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상의 중요과제로 되어 있는 특정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형식을 사용한 것으로서 개혁의 기본이념·기본방침을 명시하고 스스로 그 개혁의 프로그램을 정하거나 개혁추진을 위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23) 박광동, 앞의 글, 137-138면.

24) 박광동,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 연구원, 2011, 137면.

그리고, ② 기본법의 효력범위에 따른 분류로는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²⁵⁾

<표4> 기본법의 효력별 유형²⁶⁾

유형	주요내용	비고
제1 유형	규율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동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국가 등의 책무, 동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개별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준 및 제정·개정시 기본법의 취지존중,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개별 법률에서 도입할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동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기본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개별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의 유형	「고용정책기본법」, 「관광기본법」, 「교육기본법」, 「국세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자격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청소년기본법」, 「해양개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
제2 유형	법률에서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사용하면서 규율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이념·기본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의 운영을 자체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기본법을 구체화·세부화하는 다른 개별 법률이 없는 법률의 유형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25) 박영도, 앞의 글(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345-346면; 박광동, 앞의 글, 138면.

26) 박광동, 앞의 글(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138-139면.

마지막으로 ③ 기본법의 규범적 성격 유형에 따른 분류로는 현장으로서의 기본법,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 관리규법으로서의 기본법, 특정분야의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²⁸⁾

<표5> 기본법의 규범적 성격 유형²⁷⁾

유형	내용
현장으로서의 기본법	- 기본법 중 특정한 정책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선언적인 형태로 정하는 경우로서 특히, 해당 정책분야의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분야 종사자의 책무를 정함.
정책수단의 총괄규법으로서의 기본법	- 현장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 특히 그 기본법이 해당분야의 정책에 대한 조정수단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으로 기본법이 현장에 해당하는 기본이념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총괄조정을 위한 위원회조직, 재정수단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규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행정수단을 총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관리규법으로서의 기본법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우월적 관리수단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주목함 -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특정한 제도·행정조직 또는 정책수단에 대한 관리 및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함
특정분야의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	- 위의 세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본법의 범주 이외에 특정한 행정분야에 대한 유일한 법률이면서 이념과 총괄적인 정책수단과 개별적 행정수단을 모두 망라한 종합법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법률을 말함

이러한 기본법의 유형 중 「청년기본법」은 ① 기본법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각각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대상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정책형에 해당하며, ② 기본법의 효력범위

27) 강현철 외, 앞의 보고서, 69면.

28) 강현철 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69면.

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기본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개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제1유형의 기본법에 해당하며, ③ 기본법의 구범적 성격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기본이념의 규정, 총괄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조직, 재정수단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규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행정수단을 총괄적으로 설정하는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청년기본법」과 현행 청년 관련 법률과의 관계

청년과 관련한 현행 법률로는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우선 법률 제정시기로 보면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되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2009년 10월 9일(「청년 실업해소 특별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0년 5월 19일에 제정되었다.

결국 시기적으로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기본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선 「청년기본법」은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년기본법」이 적용되며(「청년기본법」 제6조제1항),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청년기본법」 제6조제2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이 법이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이와 같은 청년 관련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청년기본법」에 우선 적용되고,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과 관련하여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이 「청년기본법」에 우선 적용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이 청년과 관련하여 개정할 때에는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제6조제2항).

세부적인 사항으로 우선, 청년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3조제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법 제2조제1호 및 이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상 청년농업인은 40세 미만인 사람(법 제2조제2호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청년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의 목적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나, 「청년기본법」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청년기본법」제3조제1호 단서) 「청년기본법」과 다른 청년 관련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게 된다.

입법체계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총괄 · 조정, 청년 권리증진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행정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체계, 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적인 사항을 보면 「청년기본법」은 청년 전반에 관한 사항의 방향성 등을 설정하는 입법체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중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는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II. 「청년기본법」의 법체계

1. 법체계

청년기본법 관련 법령으로는 「청년기본법」과 하위법령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등이 있다.

우선 「청년기본법」은 제5장 28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 총칙, 제2장 청년정책 기본 계획 등,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 시행령」은 제4장 28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 총칙,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시행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이 있는데 이 운영세칙은 제6장 22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 총칙, 제2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장 사무국,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규정(제17조~제24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하여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청년기본법」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의 지원 집행이 가능하다(「청년기본법」 제6조제1항). 다만, 현행 청년정책이 취약계층 한시지원 중심, 개별 부처 위주 추진, 고용정책에 대한 다양한 욕구 반영 미흡 등의 한계²⁹⁾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예컨대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률에서 연령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29) 관계부처 합동, 앞의 글, 5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청년기본법」의 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청년기본법」의 기본법의 유형에서 본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집행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한데 이때 어떠한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6> 「청년기본법」 및 하위법령의 법체계

「청년기본법」 ³⁰⁾	「청년기본법 시행령」 ³¹⁾	시행규칙 없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청년의 날)	제2조(청년의 날)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제7조(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제8조(청년 실태조사)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6조(전문위원회)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 · 위탁)		
제26조(포상)	제23조(포상)	
제27조(국회 보고)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데(「청년기본법」제3조제1호),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법 제3조제1호). 이러한 청년 연령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15-24세를 청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³²⁾ 통일된 청년 연령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요 국가에서는 각 국가의 입법 정책에 따라 청년의 연령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30) 법제처,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B2%AD%EB%85%84%EA%B8%80%EB%B3%B8%EB%B2%95&subMenuId=15#undefined>(방문일: 2021.5.24.)

31) 법제처, 「청년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B2%AD%EB%85%84%EA%B8%80%EB%B3%B8%EB%B2%95&subMenuId=15#liBgc00>(방문일: 2021.5.24.)

32) 전경숙, 앞의 글, 120면.

<표7> 주요 국가의 청년 연령³³⁾

국 가	내 용
독일	『아동 및 청소년법(SGB VIII Kinder-und Jugendhilfegesetz)』에서 통합적으로 생애전반기를 다루면서,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14세에서 18세 미만, 청년은 18세에서 27세로 정의
일본	『어린이 · 청년육성지원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에서 청년(若者)은 사춘기, 청년기를 겪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정책 사업에 따라서 만40세 미만까지를 포스트청년기(ポスト青年期)로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의 자립 추진
핀란드	『청년법(Nuorisolaki)』에서 청년(nuorella)을 만 29세 이하로 청년의 자립 추진
오스트리아	『연방청년대표법(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및 『연방청년진흥법(Federal Youth Promotion)』에서 14~24세 및 30세 미만 청년의 고용, 학습, 참여, 삶의 질 개선
아일랜드	『청년노동법(Youth Work Act, 2001)』에서 15~24세 청년 직업능력 개발 추진
프랑스	『아동보호법』, 『교육법』, 『사회활동 및 가정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에서 18~25세 청년(연령규정), 16~25세 청년(직업교육)으로 구분

이와 같이 주요 국가의 청년의 연령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그 표현에 있어서도 Youth로 사용하고 있어,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연령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고, 개별 법령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년 관련 법률인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청년 연령의 범위가 모두 다르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정 당시 논의에서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청년을 15세-29세까지로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34세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고용 이외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연령 범위조정이 필요하므로 「청년기본법」 등 입법 추진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의 연령 등도 고려해서 청년 연령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³⁴⁾

33) 오재호, 앞의 글, 7면 수정 및 보완.

<표8> 국내 법령 및 정책 상 청년의 범위³⁵⁾

법령/정책	연령	법령/정책	연령
통계청(청년실업률)	15세~29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원칙: 15세~29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15세~34세	청년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법률 시행령 (청년상인)	대통령령 위임 39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시행령 (청년상인)	대통령령 위임 39세 이하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법률 시행령 (청년창업자)	15세~34세	19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창업기업
	법률 시행령 (청년창업자)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청년상시근로자
	법률 시행령 (청년실업자)	15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률 시행령 (청년실업자)	15세~34세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34) 장민선 외,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요약문 3면.

35) 김원모, 앞의 글, 32면.

이에 대하여,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미만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에 대한 정책 효과의 최대한의 참여 효과 및 노동시장 밖에서 등장한 청년 관련 문제들을 포괄·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그 이유이다.³⁶⁾

그리고 「청년기본법」과 다른 법령과 조례 상의 청년 연령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령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 범위인 19세 이상 3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7급 이상의 임용의 경우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16조 등 각종 임용이나 자격 취득 연령 등에 부합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제6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본법 보다 다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이 방식은 해당 법령이 기본법적 성격이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려는 경우에 두는 방식이다.³⁷⁾

그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국무총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청년기본법」 제8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제8조제1항).

정부는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하고(「청년기본법」 제11조제1항),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제12조제1항).

36) 이송림,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65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2.17., 2면.

3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20, 73면.

청년정책의 총괄·조정과 관련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청년기본법」제13조제1항), 청년정책조정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청년기본법」제13조제8항).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제15조제1항).

위원회의 종류에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적 절차이나 그 의결내용이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지 않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위원회³⁸⁾,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적 절차이며 그 의결내용이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가 있는데³⁹⁾,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및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심의·조정 기관으로 반드시 위원회의 조정 사항이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지 않으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보았을 때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질 수 있다.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청년기본법」제17조), ②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청년기본법」제18조), ③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청년기본법」제19조), ④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청년기본법」제20조), ⑤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청년기본법」제21조), ⑥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청년기본법」제22조), ⑦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청년기본법」제23조), ⑧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청년기본법」제24조)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

38)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16, 474면.

39) 국회 법제실, 앞의 글, 472면.

III. 청년 관련 국회 입법(안) 검토

2021년 5월 현재 「청년기본법」 관련 국회 개정법률안은 주로 ①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규정, ② 청년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③ 청년친화도시, ④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⑤ 청년발전지표 등, ⑥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⑦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⑧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 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일부 개정), ⑩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①~⑧까지는 신설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청년기본법」 관련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방안과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개정 보다는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9> 「청년기본법」 관련 국회 개정법률(안)

의안	주요 내용
(210744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2021-04-2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⁴⁰⁾
(210744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2021-01-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⁴¹⁾
(210672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2020-12-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 정책 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정책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 신설) ⁴²⁾

(21065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유의동의원 등 11 인) (2020-12-16)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 제7항) ⁴³⁾
(21058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장경태의원등14 인)(2020-11-27)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 · 관리 및 통합 · 연계를 실현 하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를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 · 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 · 제5호 · 제6호,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⁴⁴⁾
(210520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전용기의원 등 14 인) (2020-11-11)	가.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발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년분야의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다. 청년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별 청년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청년특별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 · 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바. 이 법에 따른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⁴⁵⁾
(210487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이정문의원 등 10 인) (2020-11-0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 ·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⁴⁶⁾

<p>(21027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서일준의원 등 13 인)(2020-08-05)</p>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 2 신설) ⁴⁷⁾
<p>(210141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박범계의원 등 15 인)(2020-07-03)</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충분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⁴⁸⁾

- 4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F1X0K3N1O6N1N4H4E6A4F1G0C2V3(
 방문일: 2021.5.24.)
- 4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U1Q0X1E1K3L1M5G3A3H2X8K0T0F4(
 방문일: 2021.5.24.)
- 4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S0O1L2G1F8N1A6P0P6Z3E2J0P9C6(방
 문일: 2021.5.24.)
- 4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D0N1U2V1R6Y1H0N4D6R1R2A4L7G8(
 방문일: 2021.5.24.)
- 4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R0O1G1M1T3B1T6T2C5W3I6E0F1D5(
 방문일: 2021.5.24.)
- 4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I0K1F1R1B1J1L0U4Q0T3E6S4M9Y0(방
 문일: 2021.5.24.)
- 4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W0V1W1Q0D3O1Y1R0R8Q2G3P4C8O
 4(방문일: 2021.5.24.)
- 4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S0U0G8Y0I5N1M1B1K8P5S3L4C7H2(방
 문일: 2021.5.24.)
- 4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T0B0E7Z0U3J1S6K2E4N5V1K2N7C1(방
 문일: 2021.5.24.)

IV. 국내 「청년기본법」유사 법체계 및 분석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 기본법과 당해 기본법을 이행하기 위한 개별법 현황 및 법체계 구성의 기준을 조사하여,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의 권익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범위 설정

현행 법률 가운데 법률명에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인 기본법과 당해 기본법 이행을 위한 개별법 중 개별법에 당해 기본법의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는 「청소년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교육기본법」 등이 있다.

<표10> 기본법 중 집행법 구축 법률

기본법	근거 조문	집행법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9조 제4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⁴⁹⁾	제9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2조 및 제19조	「영재교육 진흥법」
	제1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히, 「청소년기본법」은 청년이라는 대상과도 유사성을 가지고, 또한 「청소년기본법」의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의 발전이 있어 왔다.

이에 「청년기본법」의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이 될 수 있다.

(2)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공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⁵⁰⁾ 그리고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청소년 기본법」제1조).

<표11> 「청소년 기본법」

제1장 총칙	제31조 삭제
제1조 목적	제32조 삭제
제2조 기본이념	제33조 삭제
제3조 정의	제34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 삭제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36조 삭제

49)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집행법들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들의 성장단계에 적합하거나 또는 특별한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에 적절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장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이 교육기본법에 대한 특별법 내지 이행을 위한 개별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 등으로 인한 특별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재능이 뛰어난 자의 잠재력을 계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영재교육 진흥법」의 경우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기준을 두어 적용되는 특별법 내지 이행을 위한 개별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0) 법제처, 「청소년기본법」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4676&ancYd=19911231&ancNo=04477&efYd=1993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37조 삭제
제6조 가정의 책임	제38조 삭제
제7조 사회의 책임	제39조 삭제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등	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42조 삭제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제42조의2 삭제
제9조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제42조의3 삭제
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	제42조의4 삭제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42조의5 삭제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제43조 삭제
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4조 삭제
제1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5조 삭제
제15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46조 삭제
제16조 청소년의 달	제46조의2 삭제
제3장 삭제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제16조의2 삭제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16조의3 삭제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16조의4 삭제	제48조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16조의5 삭제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제16조의6 삭제	제50조 삭제
제16조의7 삭제	제51조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제16조의8 삭제	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제52조의2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 무
제4장 청소년시설	제52조의3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지원
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53조 기금의 설치 등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제54조 기금의 조성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제20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제21조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21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9장 보칙
제22조 청소년상담사	제57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23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58조 조세 감면 등
제24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59조 감독 등
제24조의2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제60조 포상
제25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6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제62조 수수료 등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제6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63조의2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청소년단체	제10장 별칙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제64조 별칙
제28조의2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제64조의2 별칙
제28조의3 별금형의 분리 선고	제65조 양벌규정
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66조 과태료
제30조 수의사업	부칙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및 사회 등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제1조 참조), 특히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참조).

동법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3호 참조), 이러한 영역에서의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기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청소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제47조 참조).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⁵¹⁾ 그리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⁵²⁾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

<표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장 총칙	제32조 청소년이용시설
제1조 목적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2조 정의	제33조의2 보고 등
제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제6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36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제6조의2 정관	제36조의2 인증의 사후 관리
제6조의3 임원	제36조의3 인증의 취소 등
제6조의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제6조의5 자료의 요청 등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의6 보조 및 출연 등	제39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제6조의7 「민법」의 준용	제40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6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1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6조의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 삭제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51) 법제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lInfoP.do?lslSeq=4081&ancYd=20040209&ancNo=07163&efYd=200502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52)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제45조 삭제
제9조 학교와의 협력 등	제46조 삭제
제9조의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9조의3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제48조 수련지구조성계획
제9조의4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제49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9조의5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제50조 수용 및 사용
제9조의6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제51조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제9조의7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53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12조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제13조 수련시설의 등록	제56조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14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57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제15조 결격사유	제58조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59조 남·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제16조의2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17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6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제18조의2 안전교육	제62조 전통문화의 계승
제18조의3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제63조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제18조의4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4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제1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65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제19조의2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20조 시정명령	제7장 보칙
제20조의2 운영 중지 명령	제66조 조세 감면 등
제21조 금지행위	제67조 감독
제22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68조 수수료
제23조 청문	제69조 권한의 위임 등
제24조 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5조 보험 가입	제8장 별칙
제26조 수련시설의 승계	제70조 별칙
제27조 수련시설운영의 휴지·폐지 등	제71조 양벌규정
제28조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제72조 과태료
제29조 삭제	
제30조 민간인의 참여 유도	부칙
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제1장의 경우 입법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칙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제2장부터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청소년활동 등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제3장), 청소년의 수련활동(제4장)과 교류활동(제5장) 및 문화활동의 지원(제6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그리고 보칙(제7장), 별칙(제8장) 및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보건대, 동법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을 유형화하여 그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제49조에서 특별히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개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⁵³⁾ 그리고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제1조).

53) 법제처, 「청소년 복지 지원법」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lInfoP.do?lslSeq=53418&ancYd=20040209&ancNo=07164&efYd=200502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https://www.law.go.kr/lslInfoP.do?lslSeq=53418&ancYd=20040209&ancNo=07164&efYd=200502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표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실태조사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3조 정관 제2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 보조금 및 출연 등 제26조 임원 제27조 이사장 제28조 「민법」의 준용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조 청소년의 우대 제4조 청소년증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32조의2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제35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제36조 청문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제6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제7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제8조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9장 보조 제3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38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 감독 제40조 예산의 보조 제41조 기관·시설 등의 평가 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1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10장 별칙 제43조 별칙 제44조 양별규정 제45조 과태료 부칙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13조 상담 및 교육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6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제17조 삭제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제19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제20조 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1조 보호지원후견인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1장은 입법목적과 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총칙규정이며, 이하의 내용에서 복지향상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우대(제2장), 건강보장(제3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제6장), 청소년복지시설(제8장)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시책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의 적용대상 가운데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의미(제2조 제4호 참조)하는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5장).

다만,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제4장)와 청소년 상담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서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제7장) 관련 시책과 사업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담당할 조직 또는 기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나,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내용 또한 학업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⁵⁴⁾ 그리고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⁵⁵⁾에 따

54)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154300&ancYd=20140528&ancNo=12700&efYd=201505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154300&ancYd=20140528&ancNo=12700&efYd=201505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55)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목적으로 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표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3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1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 지원센터에의 연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6조 실태조사	제1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19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 상담지원	제20조 별칙
제9조 교육지원	제21조 과태료
제10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1조 자립지원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부칙

특히 법의 적용대상인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별도의 장을 구분하지 않고 본문은 모두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하여 보면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제1조 내지 제4조), 지원계획과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심의기관으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제5조 내지 제7조), 상담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제8조 내지 제11조)과 수행기관으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제12조 내지 제19조)와 별칙(제20조) 및 과태료(제21조)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검토

「청소년기본법」(1991.12.31. 제정, 1993.1.1. 시행)은 1987년 11월 28일에 제정되고 1988년 5월 29일에 시행된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청소년육성법」제1조)으로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면서,⁵⁶⁾ 「청소년기본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⁵⁷⁾ 이러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청소년기본」제1조).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9세 미만의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1997.3.7.제정, 1997.7.1. 시행)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⁵⁸⁾ 이에 1997년 3월 7일에

5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31412] 「청소년기본법안(정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2079>(방문일: 2021.5.24.)

57) 법제처, 「청소년기본법」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lInfoP.do?lslSeq=4676&ancYd=19911231&ancNo=04477&efYd=1993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58) 법제처, 「청소년보호법」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lInfoP.do?lslSeq=34699&ancYd=19970307&ancNo=05297&efYd=1997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청소년보호법』제1조)으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⁵⁹⁾ 이 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 그 후 아동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9일에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⁶⁰⁾

이후, 2004년 2월 9일에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종전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별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관련법을 체계화하는 한편,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였다.⁶¹⁾ 구체적으로 보면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

hk=0#0000(방문일: 2021.5.24.)

59) 법제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53886&ancYd=20000203&ancNo=06261&efYd=2000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53886&ancYd=20000203&ancNo=06261&efYd=2000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60) 법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94462&ancYd=20090609&ancNo=09765&efYd=201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94462&ancYd=20090609&ancNo=09765&efYd=201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흥법』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⁶²⁾ 이 법이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 또한,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⁶³⁾,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조).

이렇게 「청소년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별도로 제정한 배경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대부분이 청소년활동의 일부인 청소년수련활동 및 시설에 국한되어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복지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이어서 청소년 관련법 체계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⁶⁴⁾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청소년기본법」을 분법화 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탈학교를 선언하거나 제도권 하의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만으로는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어, 2014년 5월 28일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학업중단청소년

61) 법제처, 「청소년기본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4666&ancYd=20040209&ancNo=07162&efYd=200502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4666&ancYd=20040209&ancNo=07162&efYd=200502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62) 법제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4081&ancYd=20040209&ancNo=07163&efYd=200502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4081&ancYd=20040209&ancNo=07163&efYd=200502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63) 법제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53418&ancYd=20040209&ancNo=07164&efYd=200502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53418&ancYd=20040209&ancNo=07164&efYd=200502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64) 현성수,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청소년활동진흥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문화관광위원회, 2003.11. 15면.

년에 대한 지원)를 삭제하고 이를 개별법화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관련 법제들이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으로 확산된 것은 2004년 「청소년기본법」 전면 개정과 동시에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동시에 제정될 수 있도록 개별법률 제정 근거를 기본법에 두는 형태로 체계화한 것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⁶⁵⁾

65)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서면 자문 (2021.5.12.).

제3장

해외 「청년기본법」 기반 법령체계

- I . 법체계 개관
- II . 청년 관련 단일 법령국가 : 네덜란드
- III . 헌법조항국가 : 스페인
- IV . 단일법전이 아닌 국가 : 프랑스
- V . 검토

제3장

해외 「청년기본법」 기반 법령체계

I. 법체계 개관

현행 해외의 청년 관련 법체계는 기본법 형태가 아닌 개별법 형태가 다수이다.

<표15> EU국가의 청년보장제도 관련 법령 현황

구 분	국 가	법령 현황
개별법률 국가 ⁶⁶⁾	오스트리아	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Federal Youth Promotion Act
	핀란드	The Youth Act(2006), The Act Amending the Youth Act(2010)→ 일반법의 지위
	네덜란드	The Youth Care Act 2005
	아일랜드	Youth Work Act 2001
	룩셈부르크	2008 Youth Act (Loi du 4 juillet 2008 sur la jeunesse)
	에스토니아	Youth Work Act (2010)
	라트비아	The Youth Law
	리투아니아	Youth Policy Law (2003)
	슬로바키아	National legislation on youth(the Act No.282/2008 coll)
	슬로베니아	The Youth Sector Act(2010)
	불가리아	Youth Law(2012)

	크로아티아	Youth Advisory Boards Act(2014)
	일본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2009
헌법 조항 국가 ⁶⁷⁾	스페인	Constitución española de 1978 : 청년보장제도 구축 the Royal Decree Law RDL 8/2014 of 4 July
	이탈리아	헌법 제5부 제117조: 모든 분야에 대하여 국가 법제에 의한 청년 정책과 일반적 사회적 정책에 대한 권력 부여 정형화하여 규정
개별 법률상의 보호 조항 국가	독일 ⁶⁸⁾	단일법체계 없이 사회법전 (SGB, Sozialgesetzbuch) 중 제8권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 1922년 「제국 청소년복지법(Das Reichsjugendwohlfahrtsgesetz)」을 토대로, 1961년 개정한 청소년복지법(Das Jugendwohlfahrtsgesetz)을 거쳐 1990년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 esetz)을 도입
	프랑스 ⁶⁹⁾	아동보호법, 교육법, 사회활동 및 가정법전,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 각 분야별 청년 관련 별도 법률 규정 포함

그리고 청년보장제도가 헌법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헌법의 개정절차의 난이도에 따른 헌법 유형 중 경성헌법으로 볼 수 있다.⁷⁰⁾ 즉,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에 청년보장제도가 경성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 법률보다 더 엄격한 요건 또는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청년보장제도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66) 이철선 외,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89면.

67) 이철선 외, 앞의 글, 89면.

68) 오재호, 앞의 글, 7면.

69) 프랑스의 경우 법전법 국가이기 때문에 단위법전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착수 심의의견(2021.3.23.)].

70) 헌법의 개정절차의 난이도에 따라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제정·개정절차 보다 더 어렵게 만든 경성헌법과 헌법의 개정이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 또는 의결정족수가 크게 높지 않은 연성헌법(영국, 뉴질랜드(1948), 이탈리아)으로 분류할 수 있다[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51-52면].

<표16> 스페인-이탈리아 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요건

	헌법 개정	일반 법률 제·개정
스페인 (1978년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167조제1항 ◦ 양원 재적의원 3/5이상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81조제2항 ◦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이탈리아 (1948년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138조 ◦ 제1문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제2문 양원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 회부 가능 ◦ 제3문 양원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시에는 국민투표 회부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64조 ◦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II. 청년 관련 단일 법률국가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청년 관련 단일 법률인 「청년 보호법(The Youth Care Act 1/2005)」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18세 이하(간혹 23세까지 가능) 아동 노동을 근절하고, 아동 및 청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표17> 「청년 보호법(The Youth Care Act 1/2005)」 법체계⁷¹⁾

- 일반 청년 관리를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 케어 혜택에 대한 권리요건을 다룸
- 구성
제 1 장 :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s)
제 2 장 : 청년 보호 자격(Entitlement to youth care)
제 3 장 : 청년 보호 기관 운영 재단(The foundation that maintains a youth care agency)
제 4 장 : 이용 가능한 시설(The available care facilities)
제 5 장 : 계획(Planning)

71) ILO, "Netherlands (2,273) > Elimination of child labour,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26)" Retrieved from http://www.ilo.org/dyn/natlex/natlex4.detail?p_lang=&p_isn=69605&p_country=NLD&p_count=2273&p_classification=04&p_classcount=26(방문일: 2021.5.24.)

- 제 6 장 : 보조금 및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 제 7 장 : 정책 정보(Policy information)
- 제 8 장 : 감독(Supervision)
- 제 9 장 : 문서 열람 및 보관, 파기(Access to and the retention and destruction of documentation)
- 제 10 장 : 관계자(The confidant)
- 제 11 장 : 의사 결정 참여(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 제 12 장 : 소송 제기 권리(Right of complaint)
- 제 13 장 : 청년 보호 비용 분담(Contribution towards the cost of youth care)
- 제 14 장 : 기타 법률의 개정(Amendments to other legislation)
- 제 15 장 : 이전 및 체결 절차(Transfer and concluding provisions)

『청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부처 간의 협력적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 고용, 공공부조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회복지 수급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세금환급을 통한 고용 인센티브를 최대 2년 까지 제공하고 있다.⁷²⁾

그 밖에도 사회에서 발달적 혹은 행동적 문제를 지닌 청소년의 참여를 지원하고 가능하도록 하는 「참여법 Participation Act (Participatiewet, 2015)」, 시 또는 지자체가 모든 시민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도록 하는 목적과 사회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사회 지원법 Social Support Act (Wmo, 2015)」 등이 있다.⁷³⁾

72) 라기태,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Vol.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8.29, 4면.

73) 강은진,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연구소, 2016, 16면.

III. 현법조항국가 : 스페인

스페인은 청년정책의 법제와 관련하여 「헌법(Constitución española de 1978)」의 고용정책 내에 청년보장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의 기본권 편 제3장 ‘경제 사회 정책에 관한 원칙’ 제48조는 소위 청소년 보호조항으로서 “공권력은 청소년들이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 발전에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세대와 3세대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또는 집단적 권리이자 공권력의 의무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기본법(1/1996)」이 제정되어 있다. 다만, 스페인은 「헌법」이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기본법(1/1996)」을 통해 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는 마련되어 있으나, 청년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집행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년보장제도(Sistema Nacional de Garantía Juvenil, National System of Youth Guarantee)는 학생, 직업훈련 또는 고용 상태에 있지 않는 청년들 중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 프로그램이다. 동 청년 보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 법률에 따를 경우,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① 스페인 국적 또는 유럽연합 시민권자 또는 스페인 거주 외국인, ② 스페인 지역의 도시에 등록된 자, ③ 청년 보장 가입 신청 시 16~29세일 것, ④ 신청 직전 일까지 실업 상태일 것, ⑤ 신청 직전 일까지 교육 상태에 있지 않을 것, ⑥ 신청 직전 일까지 직업 교육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Royal Decree-Law 8/2014」은 스페인 정부발의 긴급법으로,⁷⁴⁾ 동 긴급법(「Royal Decree-Law 8/2014」)은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이며, 국가 청년보장제도의 설치는 여러 조치 중의 하나이다.

긴급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스페인 경제가 심각한 장기 공황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하고 긴급한 비상 처방이 필요하고, 이러한 처방은 재정 건전화와 구조조정의 두 축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정책목적은 노동

74) 스페인은 입현왕정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의 경우 앞에 Royal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된다. 스페인 헌법에 따르면 Royal Decree-Law는 정부가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decree-law의 형태로 임시적 성격의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78년 현행헌법 제86.1조). 따라서 Royal Decree-Law는 임시 조치 성격의 정부발의 긴급법이며 일정 기간 내에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

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하고 유로화에 편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약화된 스페인 경제의 대외 경쟁력 회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긴급법의 모든 경제조치는 경쟁력 증진,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 금융재원 조달의 수월성 및 노동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긴급법도 경쟁력과 시장의 효율적 작동의 촉진, 금융재원 조달의 수월성과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의 촉진 (el primero, fomentar la competitividad y el funcionamiento eficiente de los mercados; el segundo, mejorar el acceso a la financiación; y, el tercero, fomentar la empleabilidad y la ocupación) 등 3가지 정책 축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스페인은 청년보장정책 추진동력으로서 「Royal Decree-Law 8/2014」 상에 청년정책을 입법화하여, 청년보장제도 등록 절차와 급여 수혜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청년보장제도에 등록된 청년에게는 무기한 비임금고용보조금(Non-wage recruitment subsidies)과 훈련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⁷⁵⁾ 다만, 청년보장제도가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그 외의 사회정책은 비교적 미흡한 편이다.

<표18> 「Royal Decree-Law 8/2014」 법체계

- 불황으로 인한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개혁을 위해 성장, 경쟁력 및 효율성에 대한 긴급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Royal Decree-Law 8/2014 법률 제정
- 표제(TÍTULO) IV : 고용 및 직업 증진을 위한 조치
 - 제 1 장(CAPÍTULO) : 국가 청년 보장 제도
 - 제 1 절(Sección) : 총칙
 - 제 2 절 : 국가 청년 보장 제도
 - 제 1 관(Subsección). 국가 청년 보장 제도 등록제 신설
 - 제 2 관. 국가 청년 보장 제도 등록
 - 제 3 관. 등록 정보의 변경과 삭제
 - 제 4 관. 국가 청년 보장 제도 운영
 - 제 3 절. 고용 지원 조치
 - 제 4 절. 국가 청년 보장 제도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
 - 제2장 고용 적극 정책에 관련된 조치
 - 제3장 일시적 근로 및 고용 알선 업체들에 관련된 규정들의 변경
 - 제4장 사회적 경제와 자영업에 적용되는 기타 조치들

75) 라기태, 앞의 글, 3면.

IV. 단일법전이 아닌 국가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청년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법전이나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예전대, ‘교육부 - 교육법(Code de l'éducation)’, ‘사회활동 및 가정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프랑스 보건시스템 현대화에 대한 법’, ‘고용담당부 - 청년보장 제(La garantie jeunes)’,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노동법전(Code du travail) 등 개별 법전 또는 법률에서 청년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이 있다. 특히 노동법전 (Code du travail) L.5131-3조에서 L.5131-6-1조까지는 청년고용자립지원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과거 프랑스에서의 청년정책은 도시 정책, 청년 및 스포츠부(Ministry for Urban Policies, Youth and Sports)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인하여 2017년 5월 이후에는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가 청년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및 대중 교육, 지역사회 부서(Direction de la Jeunesse, de l'E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DJEPA)를 통해 청년정책의 설계 및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청년보호, 사회적 포용, 직업 통합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면서, 프랑스 청년 우선 지원 계획의 1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⁷⁶⁾

청년 관련 법전화가 안되고 개별 법률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우 보편적 사회정책이 발달한 국가로서, 별도의 법체계 없이도 다양한 영역의 청년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 76) 목표 1.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공공 정보, 지원 및 자문 서비스 제공
 목표 2. 학업중단에 대처하여 모든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증진
 목표 3. 청년 보건 증진과 예방 조치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 강화
 목표 4.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접근 촉진
 목표 5.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접근 장려
 목표 6. 국민의 사회 및 고용 통합을 위한 통로 확보
 목표 7. 수감되거나 법적 조치를 받는 청년을 위한 재활 기회 확대
 목표 8. 청년들의 스포츠, 예술, 문화 및 양질의 오디오-비디오 및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 강화
 목표 9. 청년들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 및 새로운 인터넷 직업에 대한 접근성 확대
 목표 10. 청년의 유럽 및 국제적인 이동성 강화 및 다양화
 목표 11.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여건 강화 및 개선
 목표 12. 청년들의 공공 부문에서의 대표성 강화
 목표 13. 기관과 청년 간의 연계 강화 및 차별 타파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 Le plan Priorité jeunesse,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 2013, p.3-9)

V. 검토

해외의 청년정책 입법 관련 법체계는 개별법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개별법률 국가와 개별 법률상의 보호 조항 국가로 나뉘고, 개별 법률상의 보호 조항 국가 중에는 헌법에 규정된 경우와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는 각 국가별로 입법정책 결정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다만, 해외의 청년정책 입법에서 중요한 특징은 집행법적 성격의 법령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경우에 집행적 성격을 갖는 「청년 보호법(The Youth Care Act 1/2005)」과 청년지원에 대한 개별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에 「헌법(Constitución española de 1978)」에 고용정책 내 청년보장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Royal Decree-Law 8/2014」인 스페인 정부발의 긴급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각 개별 법전 또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청년지원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규정을 두어 별도의 법체계 없이도 다양한 영역의 청년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청년지원정책 입법은 국가별로 입법체계에 따라 각 국가에 가장 적절한 입법체계에 따르면 되지만, 이러한 청년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입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4장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 I . 입법화 방식의 선택 기준
- II .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제4장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I. 입법화 방식의 선택 기준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법령이 있어 그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법령을 개정한다.⁷⁷⁾ 그리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다.⁷⁸⁾

입법의 외형적 형식은 법률안이 주제 내지 법률에만 관련되어 있는지, 입법행위를 통해서 다수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⁷⁹⁾ 이러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법제전문가인 Alfred Menard 박사는 1954년에 법제업무 체크리스트(Brief Checklist for the Bill Drafter)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⁸⁰⁾

77) 법제처, 앞의 글, 10면.

78) 법제처, 앞의 글, 10-11면.

79) 이진국, 입법학의 발전과 전망, 입법, 법문사, 2017, 40면.

80) 국회 법제실, 앞의 글, 39면.

<표 19> 법제업무 체크리스트⁸¹⁾

	내용
1	법률안의 제명이 법률안의 일반적 주제를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2	일상용례에서 고정된 단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 용어들이 법문에서 모호함을 주지 않도록 적정하게 정의되고 있는가?
3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가 법률안 전체에서 정의된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4	수법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법률안이 간결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가?
5	명료성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서 절과 장의 조문배열이 이루어졌는가?
6	법률안의 실체적 규정들이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7	법률안이 입법목적에 충실한가?
8	법률안이 입법목적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9	법률안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지는 아니하는가?
10	법률안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현행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는가?
11	법률안이 다른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해석이나 집행에 있어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2	법률안이 현안에 영향을 주는가? 그렇다면 그에 대한 입장은 명시하고 있는가?
13	법률안의 인용조문이 정확한가?
14	서로 상충되는 조문들이 구체적으로 폐지·정리되었는가?
15	시행일이 적절하게 고려되어 관련 조항에 명시되었는가?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효력의 발생을 의도하는가?

81) 국회 법제실, 앞의 글, 39면.

이와 같은 법령의 제정·개정의 선택 기준은 청년 권리증진 시책의 입법화에도 적용되는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청년기본법」 중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집행하기 위한 개별법의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으로는 ① 정책입안의 필요성, ②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될 필요성 및 ③ 시기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⁸²⁾

우선 앞의 ① 정책입안의 필요성과 ③ 시기적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년의 비중의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 경기 후행적 특성 및 가속화,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의 어려움 등으로 청년 권리증진 관련한 상황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게 되고 있어서,⁸³⁾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청년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입안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②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될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개정의 필요사항이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조례 정비 및 청년 권리증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 법령 제정·개정 방안을 2021년 하반기까지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⁸⁴⁾

<표20> 법률 및 하위법령 등 개정 필요사항⁸⁴⁾

분야	과제명	제정·개정 법령명	소관부처	일정
일자리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고용부	'21.하
	산재보험 적용확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고용부	'21.6월

82) 국회 법제실, 앞의 글, 36면.

83) 관계기관 합동,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합동, 2021.3.30., 11면.

84) 관계기관 합동, 앞의 글(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38면.

85) 관계기관 합동, 앞의 글(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33면.

	출산 육아 참여권리 보장(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남녀고용평등법」개정	고용부	'21.6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강화	「남녀고용평등법」개정	고용부	'21. 상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 미등록 경상이자 취업 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보훈처	'21.하
주거	청년가구 전세금 보증료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	국토부	'21.6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 금융기관 대출시스템 개선	국토부	'21.6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보증료 인하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금융위	'21. 상
복지 문화	청년병사 목돈마련지원(재정지원금(추가금리 1%) 지급)	「병역법」개정	국방부	'21.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완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문체부	'21.3월
참여 권리	대학 인권센터 설치	「고등교육법」개정	교육부	'21.6월
	청년 관련 법령 체계화	(가칭)청년권익증진법 제정	국조실	'21. 하

이와 같이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청년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입안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면서 법의 구체화 실현을 위한 법체계 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며, 이에 정부에서도 「(가칭)청년권익증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의 제정 시에는 위의 Alfred Menard 박사의 법제업무 체크리스트(Brief Checklist for the Bill Drafter)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II.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1. 기본법 관련 검토

(1) 「청년기본법」의 법적 성격의 변경 및 전면 개정 방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은 정책형, 제1유형의 기본법,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에 속한다. 이러한 기본법의 유형은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개별 법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청년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정책의 다양성에 비해 청년 정책 시행의 명확한 법률적 공통적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행과 같이 개별 법률에 청년 정책과 관련한 규정들을 각각 두는 방안은 법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청년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통일적 기준이 없이 청년정책의 관할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청년정책 시행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년기본법」을 제정한 측면이 있으나, 「청년기본법」은 정책형, 제1유형의 기본법,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으로서 별도의 집행을 위한 별도의 개별법이 필요하게 되고, 새로운 개별법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현행 「청년기본법」으로 청년 관련 정책을 모두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할 수 있다. 즉,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대책형, 제2 유형, 특정분야의 종합법전 으로서의 기본법으로서 기본법 자체가 규율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이념 · 기본계획 등 기 본적인 사항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의 운영을 자체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기 본법을 구체화 · 세부화하는 다른 개별 법률이 없는 법률의 유형이다.⁸⁶⁾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청년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처럼 대책형, 제2 유형, 특정분야의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청년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3장 청년정책 의 총괄·조정을 유지하고, 현행 제4장의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을 유형화 하여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두는 방안의 구상이 가능하다. 예컨대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와 제18조(청년 창업지원)를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합치고,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부터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까지를 개별 장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86) 강현철 외, 앞의 보고서, 69면.

<표21> 구상안

법률명	주요 내용
현행 「청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 제5장 보칙 · 부칙
개정「청년기본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 제4장 청년 일자리 지원 · 제5장 청년 능력개발 지원 · 제6장 청년 주거지원 · 제7장 청년 복지증진 · 제8장 청년 금융생활 지원 · 제9장 청년 문화활동 지원 · 제10장 청년 국제협력 지원 · 제11장 보칙 · 부칙

이러한 입법형식을 선택하는 경우 하나의 기본법안에서 청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청년 정책의 통일적 집행 및 지원이 가능하고, 이러한 유형의 기본법안의 제정 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실체적·절차적 사항을 모두 기본법이 관할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등의 개별 법률은 개별적인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기본법에 따르게 될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그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른 형태의 청년 정책 지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가 있고, 또한 새로운 청년정책 관련 제도의 도입 시 이를 모두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청년기본법」과 독립된 「청년 권리증진 기본법」 제정 방안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분법화하여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삭제하게 된다.

<표22> 구상안

법률명	주요 내용
현행 「청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 제4장 보조 · 부칙
개정 「청년 권리 증진 기본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청년권의증진정책 기본계획 등 · 제3장 청년권의정책의 조정 · 제4장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 제5장 청년 창업 지원 · 제6장 청년 능력개발 지원 · 제7장 청년 주거지원 · 제8장 청년 복지증진 · 제9장 청년 금융생활 지원 · 제10장 청년 문화활동 지원 · 제11장 청년 국제협력 지원 · 제12장 보조 · 부칙

이러한 분법화를 위해서는 우선 분법이 필요한가, 법체계적으로 분법화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아래의 법령의 분법기준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표23> 법령의 분법기준⁸⁷⁾

기준	분법기준의 주요내용	요약
1	특정분야 관련사항을 단일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법령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내용의 복잡성 및 이해곤란성
2	내용이나 분야가 다른(유사성이 없는)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법령체계의 일관성 유지곤란
3	특정분야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세부분야, 유사한 성격의 분야별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체계의 복잡성 및 이해곤란성
4	기본이 되거나 유사한 법령체계와의 통일성을 강화하여, 관련법령체계의 혼란을 예방하고, 일반인의 법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사 법령체계와의 통일성 결여
5	특정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	특정산업의 집중적 육성이 필요
6	특정한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특정분야 중요성의 효율적 해결
종합	특정분야 관련사항의 망라적 규정⇒법령내용·체계의 일관성·통일성 저하 및 복잡화⇒일반국민의 이해·접근곤란성⇒각 분야 및 기능별 분법⇒법령의 준수성 및 관련행정의 효율성 강화	

위의 분법기준을 고려하여 「청년기본법」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가칭)청년권익증진기본법」으로 분법화하는 것에 있어서 ① 법령내용의 복잡성 및 이해곤란성, ② 법령체계의 일관성 유지곤란, ③ 법령체계의 복잡성 및 이해곤란성, ④ 유사 법령체계와의 통일성 결여, ⑤ 특정산업의 집중적 육성이 필요, ⑥ 특정분야 중요성의 효율적 해결이라는 기준의 검토에 있어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권리증진 기본법」으로 분법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87) 이상윤 외, 농촌공간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분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172면.

그리고 분법과 관련하여 기본법에서 분법화하여 관련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종래 이러한 유사입법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년기본법」사항 중 구체화 된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집행을 위한 개별법의 제정에 있어 기본법으로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체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2. 개별법 관련 검토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 권리증진 시책의 집행을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2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 권리증진을 위한 법률을 1개의 단일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우선 입법 정책적으로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쪽이 입법 경제적인지, 어느 쪽이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에 적합한지, 어느 쪽이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⁸⁸⁾ 그리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청년 권리증진을 위한 법률의 법적 성격을 진흥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1) 복수 또는 단일 개별법 제정 방안

1) 복수의 청년 권리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법적 근거로 하여 새로운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조문별로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88) 국회 법제실, 앞의 글, 11면.

<표24> 구상안

법률명	주요 내용
현행 「청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 제5장 보조치 • 부칙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지원 • 제4장 보조치 • 부칙
「청년 창업 지원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창업 지원 • 제4장 보조치 • 부칙
「청년 능력개발 지원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능력개발 지원 • 제4장 보조치 • 부칙
「청년 주거지원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주거 지원 • 제4장 보조치 • 부칙
「청년 복지증진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 복지 지원 · 제4장 보칙 · 부칙
「청년 금융생활 지원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금융 지원 · 제4장 보칙 · 부칙
「청년 문화활동 지원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문화 지원 · 제4장 보칙 · 부칙
「청년 국제협력 지원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국제협력 지원 · 제4장 보칙 · 부칙

이러한 입법방안의 경우 「청년기본법」상의 각각의 청년 권리증진 시책을 시책의 목적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어 정책의 집행 관련 입법에 부합하나,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권리증진 시책 집행과 관련하여 8개의 개별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은 입법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청년 관련 정책의 집행을 위한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자칫 개별 법률 간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8개의 법률을 제정·시행한다면 국민이 청년 권리증진 시책에 관해 단위별로 법률을 별도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유형화하여 몇 개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표25> 구상안

법률명	주요 내용
현행 「청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 제5장 보칙 • 부칙
「청년 주거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주거 지원(청년 주택 공급, 청년 전월세 비용, 취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등) • 제4장 보칙 • 부칙
「청년 창업 지원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창업 지원(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등) • 제4장 보칙 • 부칙
「청년 교육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교육 지원(고른 교육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등) • 제4장 보칙 • 부칙

법률명	주요 내용
「청년 복지·문화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복지·문화 지원(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등) · 제4장 보조 · 부칙
「청년 참여·권리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청년 지원 체계(금전, 청년단체, 청년시설, 센터, 조세감면, 포상 등) · 제4장 청년 지원 전달체계 · 제5장 보조 · 부칙

이러한 입법방안의 경우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권리증진 시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입법목적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어서 입법 목적 실현에 하나의 입법보다는 유리하다. 다만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권리증진 시책 집행과 관련하여 5개의 개별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은 입법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청년 관련 정책의 집행을 위한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자칫 개별 법률 간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5개의 법률을 제정·시행한다면 국민이 청년 권리증진 단위별로 법률을 별도로 봐야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하나의 청년 권리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법적 근거로 하여 하나의 새로운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법률명	주요 내용
현행 「청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 · 제5장 보칙 · 부칙
「청년권익증진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제3장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지원 · 제4장 보칙 · 부칙

이러한 입법방안의 경우 위의 첫 번째 사항과 동일하게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권리증진 시책의 집행과 관련한 1개의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제정 법률과 하위법령 단위의 구축을 통하여 청년 권리증진 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사항을 규정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권리증진 시책 추진에 유리하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권리증진 시책 집행과 관련하여 1개의 개별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은 입법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청년 관련 정책상의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개별 법률간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 또한 1개의 법률을 제정·시행한다면 국민이 청년 권리증진 시책에 대해 단위별로 법률이 제정된 경우 보다는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청년 권리증진을 위한 법률의 법적 성격

앞에서 본 청년 권리증진 시책과 관련하여 복수 또는 단일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하나의 청년 권리증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목적 실현, 입법의 경제성, 입법 체계성, 국민이 이해 용이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점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청년 권리증진 시책을 위하여 제정되는 단일 법률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 입법체계의 구조가 정해지게 될 것이다.

우선 일반 법률 구성 체계에 대해서 보면, 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총칙, 실체적 규정, 보칙, 부칙 등으로 구성된다.

<표27> 일반적인 법률 구성체계⁸⁹⁾

구분		법령 현황
1. 제명		공포일, 공포번호, 시행일
2. 본칙	가. 총칙적 규정 ⁹⁰⁾	(1) 목적규정 (2) 기본이념 (3) 정의규정 (4) 해석규정 (5) 적용범위 (6) 국가 등의 책무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 실체적 규정	(1) 행정행위(행정처분) 일반 (2) 허가의 취소 (3) 과징금 · 부담금 · 가산금 등 (4) 행정강제 (5) 보조 · 출연 · 출자 · 응자 등 (6) 위원회 등 행정기관 (7) 위임입법
	다. 보칙	(1) 행정심판 · 행정소송 (2) 손실보상 · 손해배상 (3) 조정 · 중재 (4) 행정조사 (5) 청문 · 공청회 (6) 위임 · 위탁 · 대리 · 대행
	라. 벌칙	(1) 구성요건 · 처벌범위 및 형량 (2) 양벌규정 (3) 행정질서벌(과태료)
3. 부칙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률의 폐지,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89) 국회 법제실, 앞의 글, 88-89면.

그런데, 청년 권리증진 시책을 위한 법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첫째, 일반법으로 할 것인지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의 효력범위가 일반적·보편적 사항에 관한 것인가 또는 특수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법을 분류하는데, 이에 대한 구별 실익은 특별 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있다.⁹¹⁾

이러한 효력을 가진 특별법은 예외법률로서의 성격,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 한시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⁹³⁾

<표28> 특별법은 법적 성격별 유형⁹²⁾

유형	입법례
① 특정 지역에서 실시 또는 실시를 촉진하는 일정한 사업에 관해 일반적인 규제의 특례조치의 적용을 받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을 조성, 지원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② 급부적, 시혜적 성격을 가진 특별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등
③ 특정 범죄나 안전에 대한 재재처분의 강화를 도모하거나 특정 범죄로 인한 피해예방 또는 사후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특별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④ 기본의 법질서에 편입되었거나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등
⑤ 행정기관의 설치나 조직의 신설에 따른 기존의 조직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특별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⑥ 헌정질서 유지 등을 위해 특정행위의 몰수, 공소시효정지 등을 규정한 성격의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⑦ 기존 일반법에 규정된 절차나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⑧ 국제조약이나 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

90) 법제처, 앞의 글, 47면.

91) 국회 법제실, 앞의 글, 6면.

92) 박영도, 앞의 글(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170-189면.

93) 박영도,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2, 31면.

이러한 특별법의 법적 성격의 분류에서 본다면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은 청년 권리증진 시책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사항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을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형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특별법에 해당하게 될 것이며, 법적 성격 유형에 따른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의 유형으로는 급부적, 시혜적 성격을 가진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및 법규 내용의 합리성 및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둘째,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의 제정 시에 이 법을 진흥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진흥법은 법률명에서 반드시 진흥법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진흥법, 지원법, 육성법, 촉진법, 조성법 등의 명칭으로 입안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⁹⁴⁾

이러한 진흥법은 ① 국가정책의 실질적 구현, ② 산업 및 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발전 기여, ③ 사회적 약자의 지원을 통해 복리의 증진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진흥법의 기능은 「(가칭)청년권익증진법」에 진흥법의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표29> 진흥법제의 기능⁹⁵⁾

기능	내용
국가정책의 실질적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헌법 원리의 구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법률이 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흥법제는 지원 기능 등을 통해 국가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제로서 기능하고 있음

94) 박영도, 앞의 글(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제21면.

95) 손현,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27-28면.

기능	내용
산업 및 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발전 기여	- 진흥법의 주요 대상이 산업 및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진흥법제는 산업 및 기업 육성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집행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적 약자의 지원을 통해 복리의 증진	- 진흥법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지원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가진 진흥법은 기본법, 특별법, 규제법의 성격을 혼합하여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법 보다는 진흥법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이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을 진흥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첫째,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을 순수하게 진흥법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둘째,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을 특별법 및 규제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하는 방안이 있다.

<표30> 진흥법과 유사 제도 구분⁹⁶⁾

유사제도	내용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법제와 기본법은 유사한 성격이 많음(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 기본법은 개별법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입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진흥법제의 경우는 기본법 형태일 수도 있고 개별법 형태일 수도 있음 - 규정 내용이 진흥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지원 수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된 법제를 내용상 분류에 따라 진흥법제로 구분할 수 있음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법제의 경우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되는 법률이 다수 있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반법을 두고, 특례 및 특별 규정이 필요한 경우 특별법 형식을 통해 입법되는데, 일반적으로 특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되는 진흥법제가 다수 존재

96) 손현, 앞의 글, 28-33면 요약.

유사제도	내용
규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제상 진흥법제에서도 진흥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 등 규제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규제법제에서도 규제 유인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수 규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음 - 일정 부분 진흥법제에서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법률의 입법 목적이 '진흥'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진흥법제로, 반대라면 규제법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법률의 제명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

이와 관련하여 「(가칭)청년권익증진법」에 진흥법의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특별법과 규제법의 성격이 혼합되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의 권리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가칭)청년 권리증진법」의 입법 목적에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을 진흥법과 특별법 및 규제법 성격의 혼합법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 법률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진흥법의 가장 일반적인 법률 구성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장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제4장 개발 및 사업, 제5장 보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⁹⁷⁾ 이러한 진흥법의 일반적 법률 구성 체계에 특별법과 규제법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아래와 같은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체계), 제3장 지원·육성(『청년기본법』상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 제4장 관리(규제), 제5장 보칙의 형태의 법체계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97) 손현, 앞의 글, 46-47면.

<표31>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의 입법 체계(안)⁹⁸⁾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권리증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조직의 설립 · 운영(유사입법례: 아동권리보장원) - 청년권익증진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장 청년 단체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 청년시설의 지원 및 설치·운영 - 청년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4장 지원 ·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의 선정 -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보조금 지급, 금융 · 세제 지원, 기금의 설치 등) - 기타 진흥 제도(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 · 홍보 등)
제5장 관리(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지원 전달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전달체계
제6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등

98) 손현, 앞의 글, 46-47면 수정 및 보완.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결 론

제5장

결 론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은 종래부터 취업난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 팬더믹 및 이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정책을 통한 청년 지원을 위하여 종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 기본조례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었고, 2020년 2월 4일에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법적 기반으로 하여 정부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및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공표되어 이러한 계획에 근거한 각종의 시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청년발전의 주된 목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청년기본법」제3조의제3호)에 의하여 현재 청년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청년지원, 「청년기본법」제3조의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에 의한 청년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이러한 청년정책에 의한 청년지원의 방법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고용 및 주거지원 등 개별단위의 청년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년 관련 전체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함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기본법」은 정책형, 제1유형,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기본법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법을 집행하게 하는 개별법의 제정 및 시행이 전제된다. 특히 「청년기본법」제4장의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과 관련하여, 이의 구체적 집행을 위한 규정이 「청년기본법 시행령」등의 하위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 관련 전체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의 권익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한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체계의 구축은 해외의 청년 지원 정책 입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한 입법방안과 관련하여 기본법 관련 입법방안으로서 첫째 현행 「청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이 대책형, 제2 유형, 특정분야의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으로서 전면 개정하는 방안과 둘째, 「청년기본법」과 독립된 「청년 권리증진 기본법」제정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첫째 방식은 청년정책의 통일적 집행 및 지원이 가능하나, 다른 청년 관련 개별 법률과의 관계 설정의 고려가 필요하고, 또한 기존 및 새로운 청년 권리증진 시책에 대한 전체적인 포섭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한 입법방안과 관련하여 개별법 제정 관련 입법방안으로서 첫째,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한 개별입법을 복수로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 개별법으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조문별로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제4장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유형화하여 청년 주거, 창업지원,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대하여 각각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방안은 세부적으로 청년 권리증진 시책에 대한 입법화에는 유리하나, 입법의 경제성 측면과 개별 법률 간의 충돌 가능성 측면,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용이성이 적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한 개별입법은 단일 법으로 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법령을 구축한다면 청년 권리증진 시책 추진에 유리하고, 입법 경제적 측면과 관련 개별 법률 간의 충돌 문제가 적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한 개별입법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한 개별입법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이 단일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을 일반법으로 할 것인지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은 청년 권리증진 시책에의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사항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의 특별법 및 급부적, 시혜적 성격을 가진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법으로서의 「(가칭)청년권익증진법」에 진흥법과 규제법 중 어떤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은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법 보다는 진흥법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을 순수한 진흥법으로 법적 성격을 부여하기 보다는 진흥법과 규제법의 혼합된 형태로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청년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의 권리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타당하다. 이 경우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의 입법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권리증진 서비스, 제3장 청년 단체 등 지원, 제4장 지원·육성, 제5장 관리(규제), 제6장 보조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I. 국내외 문헌

- 강은진,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연구소, 2016.
- 강현철 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16.
- 김원모,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기본법안,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법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2019.9.
- 라기태,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Vol.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8.29.
- 박광동,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박영도,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2.
- 박영도/김수진,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 법제처, 2005.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20.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 손현,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 Stefan Korioth, “독일 기본법-헌법의 지속성과 발전”, 제헌 62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대한민국국회/한국헌법학회, 2010.7.16.
- 오재호,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이슈&진단 406호, 경기연구원, 2020.3.11.

이상윤 외, 농촌공간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분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이송림,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65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2.17.

이진국, 입법학의 발전과 전망, 입법, 법문사, 2017.

이철선 외,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장민선 외,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전경숙,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4.30.

현성수,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청소년활동진흥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지원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문화관광위원회, 2003.11.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 Le plan Priorité jeunesse,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 2013.

II. 기타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21~'25), 관계부처 합동, 2020.12.

관계기관 합동,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합동, 2021.3.30.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서면 자문(2021.5.12)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착수 심의의견(2021.3.23.)

ILO, "Netherlands (2,273) > Elimination of child labour,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26)" Retrieved from http://www.ilo.org/dyn/natlex/natlex4.detail?p_lan=g=&p_isn=69605&p_country=NLD&p_count=2273&p_classification=04&p_classcount=26(방문일: 2021.5.24.)

III. 참고 법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01778) 이원욱의원 등 10인, 「청년기본법안」(이원욱의원 등 10인), 2016-08-24, 제안이유(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J6E0D8T2Q4W1G4U5R0Y5M7J6C7V1)(방문일: 2021.5.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31412] 「청소년기본법안(정부)」,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2079>(방문일: 2021.5.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F1X0K3N1O6N1N4H4E6A4F1G0C2V3(방문일: 2021.5.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U1Q0X1E1K3L1M5G3A3H2X8K0T0F4(방문일: 2021.5.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S0O1L2G1F8N1A6P0P6Z3E2J0P9C6(방문일: 2021.5.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D0N1U2V1R6Y1H0N4D6R1R2A4L7G8(방문일: 2021.5.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R0O1G1M1T3B1T6T2C5W3I6E0F1D5(방문일: 2021.5.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I0K1F1R1B1J1L0U4Q0T3E6S4M9Y0(방문일: 2021.5.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W0V1W1Q0D3O1Y1R0R8Q2G3P4C8O4(방문일: 2021.5.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S0U0G8Y0I5N1M1B1K8P5S3L4C7H2(방문일: 2021.5.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T0B0E7Z0U3J1S6K2E4N5V1K2N7C1(방문일: 2021.5.24.)

법제처, 「청년기본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951&ancYd=20200204&ancNo=16956&efYd=2020080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법제처, 「소비자기본법」(종전: 「소비자보호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548&ancYd=20060927&ancNo=07988&efYd=200703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법제처,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4260&ancYd=20140528&ancNo=12698&efYd=2015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법제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eq=206085&ancYd=20181224&ancNo=16086&efYd=2019122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법제처, 「청소년 기본법」제정·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eq=4676&ancYd=19911231&ancNo=04477&efYd=1993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법제처, 「청년기본법」,<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subMenuItem=15#undefined>(방문일: 2021.5.24)

법제처, 「청년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subMenuItem=15#liBgc0](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subMenuItem=15#liBgc0(방문일: 2021.5.24))(방문일: 2021.5.24)

법제처, 「청소년기본법」제정 ·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eq=4676&ancYd=19911231&ancNo=04477&efYd=1993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법제처, 「청소년보호법」제정 ·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eq=34699&ancYd=19970307&ancNo=05297&efYd=1997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법제처, 「청소년활동 진흥법」제정 ·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eq=4081&ancYd=20040209&ancNo=07163&efYd=200502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법제처, 「청소년 복지 지원법」제정 ·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eq=53418&ancYd=20040209&ancNo=07164&efYd=200502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154300&ancYd=20140528&ancNo=12700&efYd=201505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 5.24.\)](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154300&ancYd=20140528&ancNo=12700&efYd=201505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 5.24.))

법제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53886&ancYd=20000203&ancNo=06261&efYd=2000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53886&ancYd=20000203&ancNo=06261&efYd=2000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법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94462&ancYd=20090609&ancNo=09765&efYd=201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https://www.law.go.kr/lstInfoP.do?lslSeq=94462&ancYd=20090609&ancNo=09765&efYd=201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2021.5.24.))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부록

부록. 「청년기본법」 관련 제정안별 주요 내용

<부록> 「청년기본법」 관련 제정안별 주요 내용⁹⁹⁾

구 분	박홍근의원안	이원욱의원안	김해영의원안	정병국의원안	이명수의원안	신보라의원안
제명	청년정책 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 기본법안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 지원법안
청년의 정의	19세~34세	19세~39세	19세~34세	18세~39세	19세~34세	19세~34세
기본계획	국무총리 5년마다	국무총리 5년마다	국무총리 5년마다	국무총리 매년	국무총리 5년마다	국무총리 5년마다
(시 · 도)	지역계획			시 · 도계획		
시행계획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매년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매년	-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매년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매년
조사	내용	청년 관련 문제	청년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청년 관련 문제	청년 관련 문제	청년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형태	기초조사·여론조사	실태조사	기초조사·여론조사	실태조사·여론조사	실태조사
연구	-	청년정책연구	-	연구	청년정책연구	청년정책연구
심의·조정	중앙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조정회의	-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지방	지방청년 발전위원회	지역청년 정책위원회	-	-	지방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청년정책 수립 · 시행	-	중央행정기관의 장 청년정책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방자치단체의 장 청년정책책임관	-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자방자치단체의 장 청년정책책임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자방자치단체의 장 청년정책책임관

구 분	박홍근의원안	이원욱의원안	김해영의원안	정병국의원안	이명수의원안	신보라의원안
청년기념 기간	청년의 날	청년주간	청년주간	청년의 날 (8월 12일)	청년의 날 청년의 달	청년의 날 청년의 달
청년친화도시	-	-	-	-	청년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기본시책	참여 확대	참여확대	정치참여	-	능력개발 복지증진	능력개발 복지증진
	능력개발	능력개발	능력개발			
	복지증진	복지증진				
	고용촉진	고용촉진	고용촉진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활성화	창업지원	창업지원		창업지원	창업지원
	국제협력	국제협력	국제협력		국제협력 지원	국제협력 지원
청년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	주거안정 금융지원 결혼 · 임신 · 출산 · 양육	주거지원 금융생활지원
	주거안정					
	금융지원					
	결혼 · 임신 · 출산 · 양육					
	청년문화				문화활동 지원	문화활동 지원
	금전	청년수당	청년생활지원금			
청년 기부금제	행정지원 운영 및 활동 경비 보조	행정지원 활동경비 보조	행정지원 활동경비 보조	-	행정지원 운영 및 활동 경비 보조	행정지원 운영 및 활동 경비 보조
	국가 자생지자단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국가 자생지자단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국가 자생지자단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국가 자생지자단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국가 자생지자단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센터	-	청년지원센터		-	-

구 분	박홍근의원안	이원욱의원안	김해영의원안	정병국의원안	이명수의원안	신보라의원안
조세감면	청년단체 청년시설 청년지원센터	청년단체 청년시설	청년단체 청년시설	-	청년단체 청년시설	청년단체 청년시설
포상	청년발전 공로가 현저한 자	청년발전 · 청년지원 공로가 현저한 자	청년발전 공로가 현저한 자	-	청년발전 공로가 현저한 자	청년발전 공로가 현저한 자
	다른 청년의 모범이 되는 자	다른 청년의 모범이 되는 자	다른 청년의 모범이 되는 자	-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국회 보고	내용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청년정책 실적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청년정책 실적 청년실태조사	청년정책 실적 청년실태조사
	시한	정기국회 개회 전	정기국회 개회 전	정기국회 개회 전	정기국회 개회 전	정기국회 개회 전

현안분석 21-01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2021년 06월 02일 인쇄
2021년 06월 04일 발행

발행인 | 김계홍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9-11-91865-01-1 93360

